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6.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을 법률만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농식품이용권 지급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업무정지가 수급대상 국민에게 미칠 불편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을 신설하며, 전담기관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임직원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을 법률만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 함(안 제23조의3제1항).

나. 농식품이용권 지급 관련 자료요청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요청의 대상을 “관계 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안 제23조의3제2항).

- 다. 전담기관의 업무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가하고, 전담기관이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함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의4).
- 라. 전담기관의 업무정지가 수급대상 국민에게 미칠 불편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을 신설함(안 제23조의5).
- 마. 전담기관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임직원을 별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에 포함함(제64조).
- 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8호의2 중 “취약계층”을 “식품 이용 소외계층”으로 한다.

안 제23조의3제1항 중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를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로, “기관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관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안 제23조의4제1항 중 “지급 및 운영”을 “지급·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수행하게”를 “위탁하여 수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안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을 각각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로 하고,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안 부칙 중 “1년이”를 “6개월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제3조(정의)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신설>	8의2. “ <u>농식품이용권</u> 이란 저소득층 등 <u>취약계층</u> 이 <u>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u>	8의2. ----- ----- ----- <u>식품 이용</u> <u>소외계층</u> ----- ----- ----- -----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u>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 ----- -----「국민기초

등 농식품 이용에
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
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를 당사자의 동의
를 받아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
층에 속하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② -----

-----농식품
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
정 및 수급자격 유
지에 관한 적정성
을 확인하기-----

	<u>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u> ----- -----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u> ----- ----- -----.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u> ④ <u>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u>제23조의4(전담기관의</u>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u>	지정 등) ① ----- ----- -----지급·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 ----- ----- -----위탁하여 수행하게----- -----. ② ----- ----- ----- ----- ----- ----- ----- -----.
--	---	--

	<u>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⑤ 그 밖에 전담기</u>	----- ----- -----. 1. (개정안과 같음) 2. <u>제5항에</u>----- ----- ----- -----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	---	--

<신 설>

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

분)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23조
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
야 할 경우로서 업
무정지가 이용자에
게 심한 불편을 주
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
음하여 1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
른 과징금의 금액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제23조의3(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생략)	제23조의5(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현행 제23조의3과 같음)	제23조의6(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개정안 제23조의5와 같음)
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생략)	제23조의6(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현행 제23조의4와 같음)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개정안 제23조의6과 같음)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u>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8
----------	------

발의연월일 : 2024. 8. 2.

발 의 자 : 정희용·엄태영·김미애
김종양·강승규·김선교
배현진·조승환·최은석
신성범·김도읍·임이자
정점식 의원(13인)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써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 제8호의2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을 법률만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 함(안 제23조의3제1항).
- 나. 농식품이용권 지급 관련 자료요청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요청의 대상을 “관계 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안 제23조의3제2항).
- 다. 전담기관의 업무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가하고, 전담

기관이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함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의4).

라. 전담기관의 업무정지가 수급대상 국민에게 미칠 불편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을 신설함(안 제23조의5).

마. 전담기관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임직원을 별직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에 포함함(제64조).

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로 하고,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9.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
9. (생 략) <u><신 설></u>	

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신 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신 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

립·시행) (생략) <u>제23조의4</u>(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생략)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신설></u> <u><신설></u>	립·시행) (현행 제23조의3과 같음) <u>제23조의7</u>(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현행 제23조의4와 같음)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u>----- ----- ----- ---. 1. <u>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u> 2. <u>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u>
---	---